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131 발의연월일: 2024. 12. 31.

발 의 자:이종욱·송언석·이인선

박수민 • 박수영 • 신동욱

이종배 • 박성훈 • 최형두

성일종 · 송석준 · 김상훈

김종양 • 구자근 의원

(14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어업인의 경영을 지원하고 있으나,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.

최근 어업분야는 고령화와 신규인력 부족으로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으며,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어업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, 해외 수산물의 수입 등으로 인하여 어업에 종사하려는 영농후계자가 점차 줄어드는 등 수산업 환경이 점차 나빠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는 안정적·장기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.

이에 수산업의 경제적 지원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조세특례의 적용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

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69조의3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9조의3(어업용 토지등에 대한	제69조의3(어업용 토지등에 대한
양도소득세의 감면) ① 어업용	양도소득세의 감면) ①
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	
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	
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	
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	
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	
을 <u>2025년 12월 31일</u> 까지 양도	<u>2027년 12월 31일</u>
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	
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	
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	
다. 다만,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	
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「도	
시개발법」 또는 그 밖의 법률	
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어	
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	
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	
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	
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	
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	
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	
세액을 감면한다.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